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소재
물건 (2025-14098-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S26042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써미트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양원석

감정평가액	삼천일백칠십일만이천팔백사십오원정(₩31,712,845.-)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원제달 (2025-14098-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6.05.06	2026.05.06	2026.05.06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9 790x-- 63	토지	112.8571	281,000 31,712,845
		이	하	여	백
	합 계				₩31,712,84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I 감정평가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부동산(토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 본부의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 등에 의거 평가하였음.

나. 평가방법

1). 토지의 평가방법

①. 일반적인 감정평가의 방법

a. 원가방식(cost approach method)에 의한 원가법

원가법은 비용성 및 대체의 원칙에 의거하여 가격(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b. 비교방식(sales approach method)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 및 대체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c. 수익방식(income approach method)에 의한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②. 감정평가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 조 등 제 규정에 근거하여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③. 적용 감정평가 방법의 채택 및 그 사유

a. 수익환원법은 본건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적정순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결정과 환원율 또는 할인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이 곤란하며, 가격결정요인의 추정에 주관성개입 등의 사유로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였음.

b. 토지의 경우 원가법은 최근에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본건 토지는 최근 매립 또는 조성된 토지가 아니며 또한 최근 인근지역 내에 본건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의 조성사례 포착 등이 어려우므로 그 적용이 곤란함.

c. 공시지가기준법은 본건 토지와 제반사항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지역요인, 본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와 평가선례의 격차율을 산출하고, 인근지역 지가수준, 부동산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임.

d.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 지역 내 본건과 이용상황 등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거래사례를 포착하여 거래사례를 대상물건의 현황과 맞게 사정보정, 가격형성요인의 비교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③. 시산가격의 조정

a. 시산가격의 조정

시산가격 조정이란 감정평가 각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산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각 방식에 따른 시산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들을 상호 관련시켜 적정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b. 감정평가가가격의 결정

시산가격의 조정은 적용 감정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계산 등의 정확성과 증거 자료의 신뢰성 및 양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며, 토지의 평가에서는 상기 적시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격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의 시산가격 조정 절차를 통하여 감정평가가가격을 결정하였음.

다. 평가조건

본건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개략적인 면적(약 60㎡)을 산출한 후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조건에서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4.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등

가. 기준가치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 규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나. 기준시점 등

본 감정평가의 현장조사일은 2026년 5월 6일이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장조사완료일인 2026년 5월 6일로 결정하였음.

다. 기타사항

- 1).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지역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는 원제달외 9인 공유지분으로서, 원제달 지분을 특정할 수 없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거하였으니 참고 바람.
- 3).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시 참고 바람.
- 4). 본건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개략적인 면적(약 60㎡)을 산출한 후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조건에서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 바람.
- 5). 현장 조사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본건 남서측 일부에 컨테이너(3x6) 및 중앙에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4.0㎡)가 소재하나, 제시외 건물 구조의 견고함과 이동의 용이성 등을 감안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니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6). 후첨 사진을 제시한 것처럼 본건 중앙에 봉분이 소재하여 분묘로 추정되나, 현장 조사시 분묘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바 공매 참여시 재확인 바람.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평택시 도일동	393-6	임야	790중 112.8571	자연녹지지역	72,700	-

항공 위치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III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근거

가.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임.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이 비교가능한 아래의 공시지가 표준지(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2). 비교표준지 내역

기호	소재지	면적(m ²)	지목	용도지역	도로교통	2026년 공시지가 (원/m ²)	비고
			이용상황		형상/지세		
A	도일동 293-5	10,424	임야	자연녹지	세로(불)	65,700	선정
			자연림		부정형/완경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다.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①. 대상기간 : 2026.01.01.~2026.05.06
- ②. 대상지역 : 경기도 평택시
- ③. 적용변동률 : 용도지역별(자연녹지)

지역(기간)	변동률(%)	비 고
경기도 평택시 (2026.01.01~2026.05.06)	0.316	경기도 평택시 (26.01.01~26.05.06) (녹지) 2026.01.01 ~ 2026.03.31 : 0.208 2026.03.01 ~ 2026.03.31 : 0.093 $(1 + 0.00208) * (1 + 0.00093 * 36/31)$ ≒ 1.00316

※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토지가격수준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요인은 대등시 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마.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12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1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지세, 방위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7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현황 도로 등에서 열세하나 비교표준지 하천구역 제한으로 우세하고 행적적조건 전체적으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9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바. 그 밖의 요인 비교

1). 보정의 필요성

“그 밖의 요인”이란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의 정상거래사례나 평가선례 등에 기초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게 되며, 이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객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2). 인근지역 사례

가). 인근지역 평가선례 내역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가	도일동 393-6	임	37.61	자연녹지	267,000	2025.01.22	공매	본건
나	도일동 393-7	임	1,537	자연녹지	150,000	2026.03.11	담보	-
다	도일동 303-9	임	5,589	자연녹지	355,000	2022.05.18	법원경매	-
라	도일동 303-5	임	4,640	자연녹지	256,000	2022.05.18	법원경매	선정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정보체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내역

(단위: m², 원, 원/m²)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원)	사례단가 개별지가
1	도일동 866-26	임	200 -	자연녹지 토지임야	부정형/완경사 세로(가)	2025.02.27 -	40,000,000	200,000 59,6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토지 단가 : 40,000,000원 / 200m ² ≒ 200,000원/m ²							
2	도일동 842-5	임	946.3333 -	자연녹지 임야기타	부정형/완경사 세로(가)	2021.05.12 -	287,000,000	303,275 68,5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토지 단가 : 287,000,000원 / 946,3333m ² ≒ 303,275원/m ²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지가는 거래시점 당시 기준

다). 인근지역 유사토지 가격수준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조건	가격수준	비고
자연녹지	임야 (자연림)	세로(가)	약 270,000 ~ 300,000원/m ² 수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3). 보정치의 산정

가). 사례선정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위치 등이 유사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 기호(라)를 선정하여 그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함.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라	도일동 303-5	임	4,640	자연녹지	256,000	2022.05.18	법원 경매	-

나). 평가사례에 의한 비교표준지 가격산정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사정 보정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사례기준가격 (①, 원/㎡)
A	라	256,000	1.08401	1.000	1.000	1.000	0.848	235,326
시점수정	경기도 평택시 (2022.05.18.~2026.05.06.) 자연녹지지역 지가변동률 적용함.							
일반요인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동일 사회·경제권역에 속하므로 상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평가사례 자연취락지구, 비교표준지 하천구역)에서 열세함.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	0.95	0.95	-	0.94	1.00	0.84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다).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비교표준지 기호	2026.01.01 기준 공시지가	시점수정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②, 원/m ²)
A	65,700	1.00316	65,908

라). 가격 격차율 산정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①)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②)	가격격차율 (=①/②)
A	라	235,326	65,908	3.571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표준지 기호	보정 내용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격차율을 참작하되, 인근지역 유사평가사례와 인근지가수준 등을 종합하여 그 밖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보정함.	3.57

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m ²)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1	65,700	1.00316	1.000	1.195	3.57	281,172	28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m ²)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	토지 단가 (원/m ²)
-------------------------------------	---	------	---	------	---	--------------	---	------------------------------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상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내역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가격조사자료 중 인근지역 「거래사례 2」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단위: m², 원, 원/m²)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실거래가액(원)	사례단가 개별지가
2	도일동 842-5	임	946.3333 -	자연녹지 임야기타	부정형/완경사 세로(가)	2021.05.12 -	287,000,000	303,275 68,5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토지 단가 : 287,000,000원 / 946.3333m ² ≒ 303,275원/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의견	비교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사정 보정치	1.00

4) 시점수정

사례	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	2021.05.12.~2026.05.06	13.869	1.13869	경기도 평택시 '자연녹지'

5) 가치형성요인 비교

(1) 일반요인 비교

의견	대상 토지와 사례는 동일 사회·경제권역에 속하므로 상호 대등함.
일반요인 비교치	1.000

(2) 지역요인 비교

의견	대상 토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바.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0.95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92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지세, 방위 등에서 열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6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현황 도로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3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S26042901호」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평가842

본건 기호	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사례단가						
1	2	303,275	1.000	1.13869	1.000	0.839	289,737	290,000

3. 토지의 시산가액 조정 및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단가)

본건기호	①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평가액 (원/㎡)	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 (원/㎡)	비고 (격차율) (①/②)-1
1	281,000	290,000	-0.031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동 규칙 제 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4. 토지 가격의 평가액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1	평택시 도일동	393-6	임야	790중 112.8571	112.8571	281,000	31,712,845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임야	자연녹지지역	9 790x— 63	112.8571	281,000	31,712,845	원 제달 지분
합 계				이	하	여	백	₩31,712,845.-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2. 교통상황 | 3. 형태, 지세 |
| 4. 이용상황 | 5. 접면도로상황 |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
|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 9. 기타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소재 "내리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은 근거리에서 소재하여 보통임.

3. 형태, 지세

본건은 사다리 남향 완경사의 토지임.

4. 이용상황

본건은 토지임야 상태임.

5. 접면도로상황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2. 교통상황 | 3. 형태, 지세 |
| 4. 이용상황 | 5. 접면도로상황 |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
|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 9. 기타 |

7. 제시목록외의 물건

본건 남서측 일부에 컨테이너(3x6) 및 중앙에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4.0㎡)가 또한 본건 중앙에 봉분이 소재하며 분묘로 추정됨.

8. 공부와의 차이

없음.

9. 기타

임대관계 이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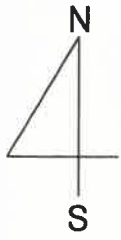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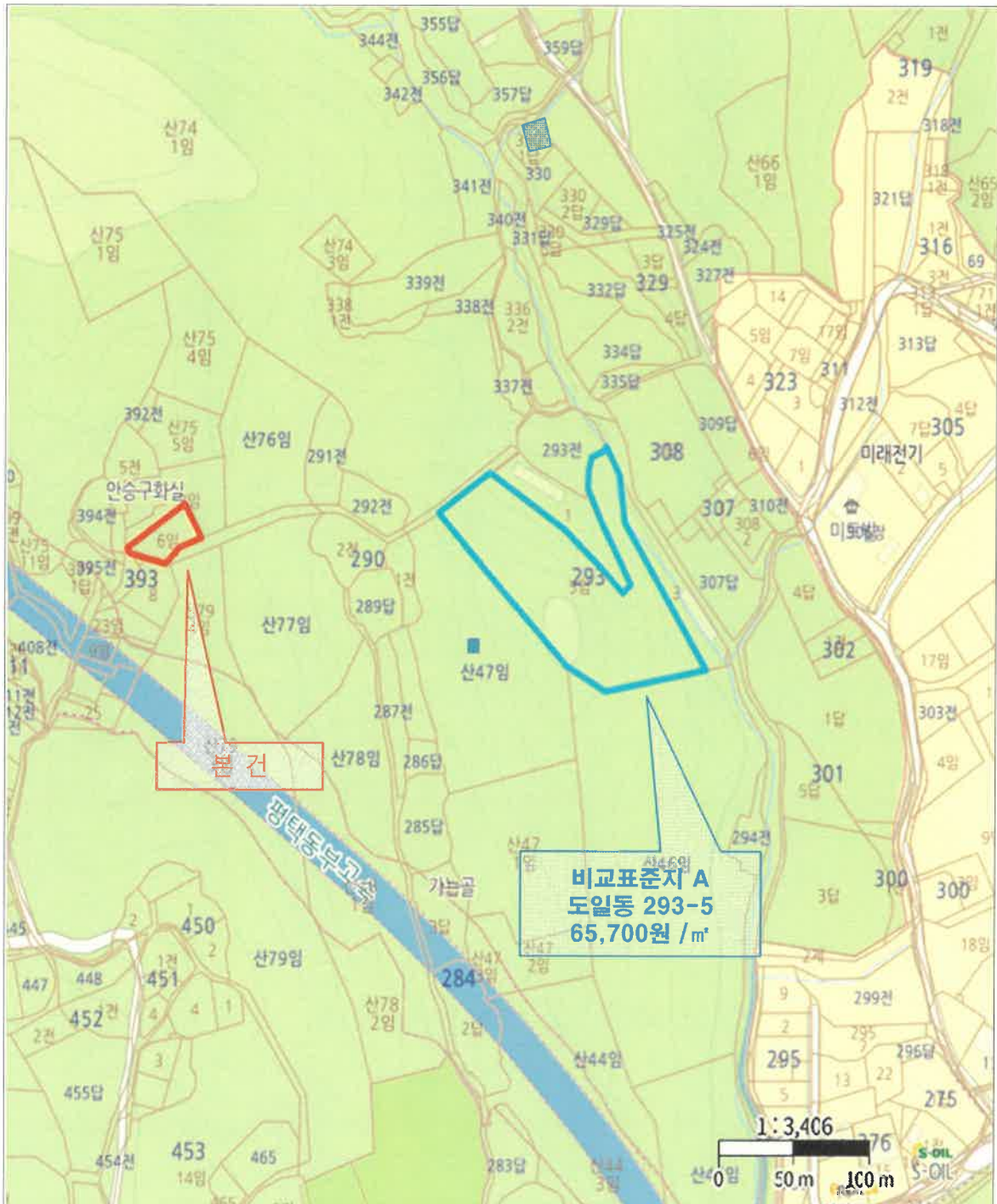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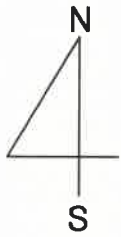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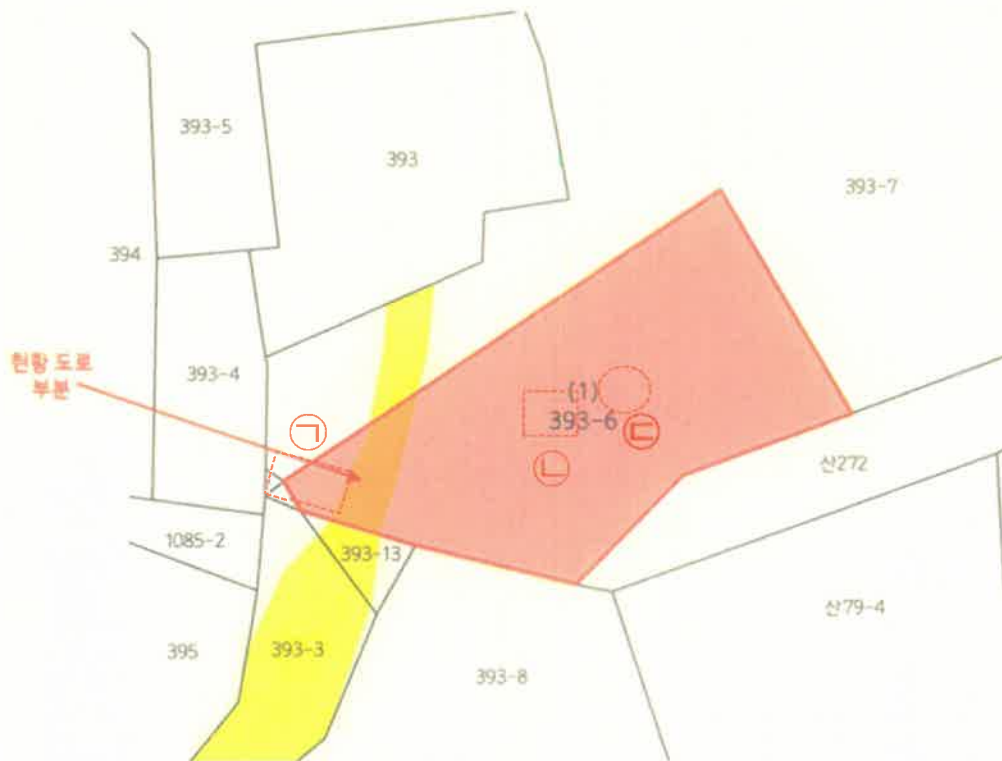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393-6

No scale



- ㉠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3x6)
- ㉡ 소유자 미상의 철파이조 판넬지붕 창고 약 4.0 m²
- ㉢ 소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주위 환경>

사 진 용 지



<본건 현황도로 부분>



<본건 남서측 일부 컨테이너>

사 진 용 지



<본건 중앙부분 참고>



<본건 중앙 묘지로 추정되는 부분>